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나31662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AA 외 6인)

【피고,상고인】 신BA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AB)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6. 선고 2001나3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식회사 하CA드코리아(이하 '하CA드코리아'라 한다)는 1998. 9. 29. 피고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다음, 1998. 9. 30.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1999. 9. 29.로 정하여 무역금융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았고, 1999. 9. 29.자로 무역금융 한도거래약정 및 구 보증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피고와 사이에 그 판시 신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다음 무역금융 한도거래약정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1999. 12. 27.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로써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신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특약사항란에 "구 보증서에 의하여 신BA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라는 기재를 하였고, 신 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신 보증은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에 불과하고, 신 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된 문구의 취지는 피고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 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액만큼 감축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채무가 신 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967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한 약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약관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문언과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약관 제17조는 약관 제16조에 정해진 면책사항에 적용될 면책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면책기준)을 정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면책사항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는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보증한도를 구 보증서의 보증 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면책사항의 추가는 약관 제1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과 면책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